

2026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

추가모집 공고

평창군은 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육성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중소기업 경영인들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가모집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. 8. 27.

평 창 군 수

1. 사업개요

- 사 업 명: 2026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
- 사업기간: 2026년 9월 ~ 11월
- 공고기간: 2026. 8. 27. ~ 9. 4. (9일간)
- 사 업 비: 50백만원 ※ 1개 업체 50백만원 지원
- 사업대상: 평창군 내 **제조업분야** 중소기업(사업자등록 또는 공장등록 필수)
- 사업내용: 기계설비, 시설확장, 제품개발·품질향상 사업비 지원 등

2. 보조사업 신청

- 신청기간: 2026. 8. 27. ~ 9. 4. (9일간)
※ 신청자 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
- 신청방법: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
- 접 수 처: 평창군청 관광경제국 경제과 기업지원팀(☎ 033-330-2750)
- 신청대상: **관내 제조업분야 중소기업(사업자등록 또는 공장등록 필수)**
※ 건물이 본인 소유이거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법인

※ 신청제외

-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평창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
-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
- 과거 평창군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기업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기업
- 대기업 발생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%이상을 소유한 자 또는 기업
- 전액 자본 잠식중인 기업(복식부기 의무적용 대상에 한함)
-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자 또는 기업
-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보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기업
- 불건전 영상 게임기 및 도박게임 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- 사업대상부지 관련하여 설치예정 부지에 근저당, 가압류 등의 제약사항이 있는 경우

※ 보조사업 지원 시 목적대로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함.

○ 지원내용

- 기계설비
- 시설보수 및 확장
- 기업인증 취득지원
- 경영컨설팅 지원
- 품질수수료 지원
- 기타 중앙·광역지자체 등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 연계에 있어 필수적인 사업 지원

○ 신청 시, 제출서류

- 1) 평창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신청서 1부. [붙임1]
- 2) 사업계획서(공모사업 관리카드, 공모사업 추진계획 포함) 1부. [붙임2]
- 3)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청렴 이행서약서 각 1부. [붙임3, 4]
- 4) 주민등록 등본 1부.
- 5)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(해당기업) 1부.
- 6) 신청기준 3년 평균 매출액 자료(재무제표 또는 매출 증빙자료)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1부.
- 7) 4대 보험 가입 증명서(고용인원 확인용). 1부.
- 8) 각종 기업인증 증명서(해당기업) 각 1부.
- 9)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.

10) 보조사업 지원관련 서류

- 시공업체 견적서(부가세 명시) 1부.

※ 견적서 상 제품 모델명 등 세부사항 필수

-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- 사진대장(공사 전) 1부.

11) 토지소유자, 건물주, 영업주 관계 증명 자료(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)

- 본인 건물(토지)일 경우: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등기부등본 각 1부.
- 본인 건물(토지)이 아닐 경우
 - ▶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등기부등본 각 1부.
 - ▶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.
 - ▶ 건물(토지)주 동의서 1부. [붙임5] ※ 인감증명서 인감 또는 본인서명 날인
 - ▶ 건물(토지)주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.

12) 첨부서류 ppt 요약본 5매 이내 또는 한글파일 요약 3매 이내 (심사 시 필요서류)

- 1차 서류 및 현장 점검 후 2차 심사(기업지원심의회) 시 제출

○ 신청 시 주의사항

- 1) 과대 견적 및 문서위조 등 보조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,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됨.
- 2)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보조금 또는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. 다만 영업부진,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.
- 3)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을 위한 업체를 선정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」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.
※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 업체 선정 시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할 경우 입찰로 계약 진행해야 함 (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, 자부담률 50%이상인 경우 적용제외)
- 4) 추후 공모사업 선정 후 사업추진 시 최초 신청한 사업계획서대로 추진하여야 하니 신중히 작성해야 함.
※ 사업심의 시 제출되어 결정된 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

○ 참고사항

- 1) 사업자 선정 후 비용은 사업자가 우선 부담(정산 후 보조금 지급)
- 2) 총사업비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90%를 지원(최대 5천만원),
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

※ 인증취득, 컨설팅, 기타 수수료는 자부담 원칙

- 3) 보조금은 신청내역과 실제 공사내역을 확인하고 업체에 결제 완료한
내역 확인 후 계좌이체
- 4) 신청서에 기재한 환경개선 범위 이외 공사는 자부담
- 5) 보조금은 심의, 정산 과정 중 위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.

※ 보조금 신청 후, 이중(중복)수혜로 판명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음

- 6)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.
- 7)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.
※ 등기 시 특약사항으로 기재
- 8)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지방자치단체장
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이나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의
제공이 불가함.

※ 사후관리기간 : 부동산, 부동산 종물의 경우 10년,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
재산의 경우 5년

3. 보조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

○ 1차 심사: 사업계획 적격여부 검토 및 사업대상지 현장 점검 등

- 기 간: 2026. 9. 7. ~ 9. 15.(9일간)
- 심의사항: 지원사업 적정 여부 선정 평가표 [붙임6]
 - 사업계획 및 신청서류 적정 여부 검토
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내용 지원 여부 조회
 - 사업대상지 현장 점검
- 심사결과: 1차 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2차 심사 가능

※ 부적격 사유

- ① 사업신청대상 조건 미충족 시 ② 신청 및 제출서류 미비 시
- ③ 보조사업 사업수행 업체 선정 시 「지방계약법」에서 정한 계약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, 이에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 미 이행하였을 시

○ 2차 심사: 심의를 통한 사업대상자 선정

- 「평창군 기업지원심의위원회」 심의: 2026년 9월 중

※ 심의일정은 추후 통보, 필요시 발표 평가 진행(사업계획 5분, 질의응답 5분)

- 위원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

- 보조사업자 선정

- 서류평가와 위원평가의 합산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(동점일 경우 위원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순위로 선정)

○ 지원결정 안내: 2026년 9월 중(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)

4. 사업추진 및 보조금 교부

○ 사업추진 : 2026년 9월 ~ 11월

※ 사업추진은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부터 진행

○ 사업완료

- 1) 사업완료 후 5일 이내 정산서류를 평창군 관광경제국 경제과에 제출
- 2) 보조사업 지원신청 내역과 공사내역을 비교하여 보조금액 결정

○ 제출서류

- 1) 보조사업 청구서 1부. [붙임7]
- 2) 보조사업 결과 보고서 1부. [붙임8]
- 3) 공사(전·중·후) 사진 1부.
- 4) 지출 및 계약관련 서류(전자세금계산서, 계좌이체내역서, 시공업체 통장사본,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, 하자보증 이행각서 또는 하자보증서, 납품확인서 또는 공사완료 확인서, 물품구입 또는 공사계획서, 견적서 등 각 1부.)

5)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(사업신청자 명의) 1부.

※ 보조사업 집행 용도로만 사용(기존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가능)

6)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
7) 영업신고증(해당 업종) 사본 1부.

※ 증빙서류는 사업비의 지출이 명확히 확인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집행 여부가 불분명한 증빙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.

○ 보조금 교부: 사업진행 및 대금지급, 정산 완료 후 보조금 지급(계좌이체)

5.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

○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 제25조에 의거 보조사업 문제점 분석 및 성과 평가 → 차기 사업 반영

○ 지원기업에 대한 연계사업 발굴 추진

○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

- 연 1회 이상 정기 실태조사 및 5년 이상 영업 유지

○ 성과 목표치 설정을 통한 성과 평가 자료 구축

6. 지원중지 및 환수사항

○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을 승인 없이 매각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 제공 등을 하는 경우

○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

○ 부정수급의 경우

- 신청자가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, 지급받은 행위 일체 → 보조금 환수 및 향후 5년간 제한

○ 이중(중복)수혜의 경우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타 기관 및 부서에서 지원하는 동일 목적의 사업으로 인정될 경우

○ 휴업·폐업 및 사업장 이전(평창군 이외지역)의 경우

- 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

- 환수금액: 잔여개월 수(60개월 - 영업개월 수) × 월평균보조금액

※ 반환금 환수절차

- 1) 의견청취: 「행정절차법」 제22조에 의거
- 2) 반환명령: 반환사유, 반환액 등 명시, 반환명령 통지
- 3) 반환금 납부기한: 징수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
- 4) 형사고발: 강제징수 이외에 형사고발 병행 가능

붙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신청서(붙임1 ~ 붙임8) 각 1부. 끝.